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일어일문학과와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우수학생의 유치) 일어일문학과 소속 교수들을 일어일문학과 석·박사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교육과정)

1. 일어일문학과는 일본어학·일본문학·일본문화의 전공 과정을 가진다.
2. 석사과정은 전공 24학점과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박사과정은 전공 36학점과 연구지도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동일 과정 내 동일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 인정 처리가 불가하다.

제5조(과목개설) 과목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2

개년도 이내에는 동일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

제6조(교·강사 배정)

1. 개설 교과목의 교·강사 배정은 전임교수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교·강사를 배정할 때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한다.
3. 전임교원의 연구년이 되거나 수강생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지도교수의 선정)

1. 지도교수 신청서는 석·박사과정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말에 제출한다.
2. 지도교수의 선정 시 본인의 전공 및 연구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3.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해당 교수와 면담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대학원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	과목 수	면제기준
일어일문학과	석사 - 2 박사 - 4	석사과정 : 석사학위 논문의 개요를 밝힌 연구보고서를 지도교수와 협의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박사과정 : KCI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와 공저로 등재지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외의 연구자와 2인 공저를 했을 경우는 2편 이상의 논문게재가 이루어졌을 경우 면제할 수 있다. (2018.01.30.신설)

제9조(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석사과정생의 경우 전공 18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박사과정생의 경우 전공 27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제10조(외국어시험 과목)

1. 외국어시험 공지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응시한다.
2.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 학생은 영어 혹은 일본어, 외국인 학생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한다.
3. 공인어학 성적 및 해외유학(연수)에 의한 면제는 내국인 학생에 한하며,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4. 공인어학 성적에 의해 면제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석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노어, 서반아어이다.
 - ② 박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이다.
5. 해외유학(연수)에 의해 면제 가능한 언어는 다음과 같다.
 - ① 석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노어, 서반아어이다.
 - ② 박사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이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석사학위 과정 선택)

1. 석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석사학위 과정생은 전공 24학점, 연구지도 9학점 이수, 외국어 시험 통과(공인어학 시험 성적 등), 예비발표 1회를 한 후 학위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박사학위 과정생은 전공 36학점, 연구지도 9학점 이수, 외국어 시험 통과(공인어학 시험 성적 등),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편 이상 등재, 예비발표 1회를 한 후 학위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1. 학위취득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 단, 사유서를 첨부한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는 매 학기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지도를 받는다.

제14조(예비발표)

1. 논문심사 신청 이전에 예비발표를 진행한다.
2. 예비발표의 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협의한 수 진행한다.
3. 예비발표는 1학기 기준 4월 둘째~셋째 주, 2학기 기준 10월 둘째~셋째 주에 진행하며, 예비발표 일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5조(논문심사위원)

1. 석사과정생의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2. 박사과정생의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외부 논문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논문대체 심사절차)

1. 연구논문의 합격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이 우선한다.
2. 연구논문의 심사 절차는 학위논문의 심사 절차에 준한다.
3. 연구논문의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17조(논문 제출)

1. 연구논문의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일어일문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며, 제본은 겉표지 하드카바가 필요 없다.
2. 연구논문 제본분은 학과에서 3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주최하며, 전체 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본 내규에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본 내규에 추가한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